

위험성평가 인정심사위원회 회의록

□ 기관명 : 경남동부지사

심사일시	2023. 6. 9. (금) (9회차)	심사방법	대면심사	
심사안전	▶ 인정심사대상 : 4 개소 ▶ 취소 등 : - 개소			
■ 심사내용 및 결과 ○ 위험성평가 인정 결정 - 인정 결정 : 심사 대상 4개소 중 0000 0000등 3개소에 대하여 위험성평가 인정 심사 기준에 의거 인정 결정함. (종합점수 70점 이상) * 산재예방요율제 적용 : 0000 0000 등 2개소는 2024년부터 산재보험료 20% 감면될 예정임 * 인정사업장 중 0000는 기타서비스업 사업장으로 요율제 적용 제외됨. * 산재예방요율제 적용대상* 은 징수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고시하는 사업종류 중 제조업, 임업, 위 생 및 유사서비스업으로 상시근로자수 50명미만인 사업장 적용 - 근거 : 산재예방요율제 운영에 관한규정 제3조(산재예방요율제 적용대상) - 불인정 결정 : 000000는 위험성평가 인정 기준에 의거 불인정 결정함.				
■ 심사결과 공개여부	☐ 공개			
	☒ 부분공개 (사유 및 공개 내용 : 사업장 정보 등 비공개 정보 삭제 후 최종 심사 결과만 공개)			
	☐ 비공개 (사유 :)			
■ 심사위원 서명				
성 명	서 명	찬반(○,×)	심사 제외 대상	제외 사유
윤기한				
배광호				
이상영				
이동규				
김태구				
신정학				
유병철				

※ 심사 제외 대상은 심사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컨설팅·현장심사를 직접 수행한 사업장을 말함
※ 위험성평가 인정심사결과서 등 관련서류는 별도 첨부